

지속가능한도시, 춘천

춘천형 ESG+ 지표



목차

I. 참고자료

II. 춘천형 ESG+ 지표

III. 춘천형 ESG+ 진단항목 정의서

I . 참고자료

1. K-ESG

자료: K-ESG가이드라인, 2021

2. 사회성과인센티브 (Social Progress Credit: SPC)

자료: 사회성과인센티브 매뉴얼, 2024

3.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SVI)

자료, 2024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I. 참고자료

1. K-ESG

□ 구성 방향

○ 기업의 ESG 경영과 평가대응 방향 제시

- 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ESG 경영 요소와 평가기관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평가항목 제시를위해,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지표와 공시기준 등*을 분석하여 통적이고 핵심적인 61개 사항 마련

* DJSI, MSCI, EcoVadis, Sustainalytics,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등

- 글로벌 기준 중심의 기본 진단항목, 글로벌 기준에서도 일부 사용 되고 있거나 국내 제도에서 중요시하는 ESG 경영 요소를 추가 진단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
- 기업의 ESG 추진 속도, 업종, 규모 등에 따라 글로벌 기준부터 국내 제도를 고려한 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
- 주요 해외 ESG 평가지표에 대한 대응을 공통적으로 고려하되, 해외와 국내의 사회 문화적·법제도적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설계
- 국내 특성이 고려된 진단항목 개발 시, 해외 지표와의 연계성 해설을 통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 평가기관들이 사용하는 공시방법, 사용단위 등 항목별 평가기준 기반의 항목해설서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이해도 제고

○ 국내 상황을 고려한 ESG 요소 제시

- 각 분야별 전문가, 전문기관,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기업이활용 가능한 문항으로 구성
- 글로벌 기준 중심의 기본 진단항목, 글로벌 기준에서도 일부 사용 되고 있거나 국내 제도에서 중요시하는 ESG 경영 요소를 추가 진단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
- 기업의 ESG 추진 속도, 업종, 규모 등에 따라 글로벌 기준부터 국내 제도를 고려한 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
- 주요 해외 ESG 평가지표에 대한 대응을 공통적으로 고려하되, 해외와 국내의 사회 문화적·법제도적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설계
- 국내 특성이 고려된 진단항목 개발 시, 해외 지표와의 연계성 해설을 통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선택적으로 고려할수 있도록 지원

○ 산업 전반의 ESG 수준 제고를 위한 범용적 가이드라인 제시

- (기업일반) ESG 경영 수준 향상을 위한 방향성 제시에 초점을 두고 기업 스스로

ESG 경영 목표 수립이 용이하도록 활용가이드 제시

- 또한, 국내외 평가지표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의 제시를 통해 평가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평가대응 역량 확보
-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전략 수립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우선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 선별 제시(27개 항목)
- (평가·검증기관) ESG 평가 시 K-ESG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평가·검증기관의 니즈를 고려하여 기본 진단항목 외 대체·추가 항목 제시

□ K-ESG 가이드라인 항목 구성 개요

○ 기본 진단항목 체계

- K-ESG 가이드라인 분류 체계
- (영역) 앞서 기술한 ESG 정의를 기반으로 ESG 관련 정보 공개여부 측정 항목 추가 하여, 정보공시(Public),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4개 영역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 대분류 설정
- (범주) 국내외 ESG 공시/평가기준에서 공통 제시 이슈 기반으로, 조직이 ESG경영을 통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가치(Social Value)로 설정
- (진단항목) 가이드라인 각 '범주'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정성·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세부 항목
- 기본 진단항목 정의서 구성 체계
- (항목정의서) 조직의 ESG 성과를 진단하기 위한 항목 설명, 점검 기준 및 단계 등 진단에 대한 방향성과 예시 제공
- (추가설명) 각 진단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한 ESG경영 방향성과 성과 점검 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 기술. 진단항목에 따라서는 대체 진단 기준 및 활용 근거 설명
- (용어정리) 항목정의서 및 추가 설명 중 별도 기술 필요 용어 정의
- (참고자료) 항목정의서에 기술된 설명, 산식, 활용과 관련된 법/제도, 해외 유사 지표 제시
- 추가 진단항목 정의서 구성 체계
- (추가 진단항목 정의) 각 영역의 범주별로 산업 및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는 글로벌 평가지표에 속하지는않으나 ESG 경영의 추가적인 필요요소를 제시.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단항목
- (활용)
 - ① 기본 진단항목 적용 불가 시 대체 활용
 - ② 기본 진단항목 외 추가적으로 조직의 ESG 성과 점검
 - ③ 미래지향적 목표 설정에 활용(ex. 산림탄소흡수량, 고졸직원 채용 등)

○ K-ESG 진단 항목

| K-ESG 진단항목 (노란색박스 중소기업 대상 K-ESG) | | | |
|----------------------------------|---------|--------------------|--------------------------|
| 영역 | 범주 | 분류번호 | 진단항목 |
| 정보공시 | 정보공시 형식 | P-1-1 | ESG 정보공시 방식 |
| | | P-1-2 | ESG 정보공시 주기 |
| | | P-1-3 | ESG 정보공시 범위 |
| | 정보공시 내용 | P-2-1 | ESG 핵심이슈 및 KPI |
| | 정보공시 검증 | P-3-1 | ESG 정보공시 검증 |
| 환경 | 환경경영 목표 | E-1-1 | 환경경영 목표 수립 |
| | | E-1-2 | 환경경영 추진체계 |
| | 원부자재 | E-2-1 | 원부자재 사용량 |
| | | E-2-2 | 재생 원부자재 비율 |
| | 온실가스 | E-3-1 |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scope2) |
| | | E-3-2 | 온실가스 배출량 (scope3) |
| | | E-3-3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
| | 에너지 | E-4-1 | 에너지 사용량 |
| | | E-4-2 |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
| | 용수 | E-5-1 | 용수 사용량 |
| | | E-5-2 | 재사용 용수 비율 |
| | 폐기물 | E-6-1 | 폐기물 배출량 |
| | | E-6-2 | 폐기물 재활용 비율 |
| | 오염물질 | E-7-1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 | | E-7-2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
| 환경 법/규제 위반 | E-8-1 | 환경 법/규제 위반 | |
| 환경 라벨링 | E-8-2 |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 |
| 사회 | 목표 | S-1-1 | 목표 수립 및 공시 |
| | 노동 | S-2-1 |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
| | | S-2-2 | 정규직 비율 |
| | | S-2-3 | 자발적 이직률 |
| | | S-2-4 | 교육훈련비 |
| | | S-2-5 | 복리후생비 |
| | | S-2-6 | 결사의 자유 보장 |

| | | | |
|------------|--------------|------------|---------------------------|
| | 다양성 및 양성평등 | S-3-1 | 여성 구성원 비율 |
| | | S-3-2 | 여성 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
| | | S-3-3 | 장애인 고용률 |
| | 산업안전 | S-4-1 | 안전보건 추진체계 |
| | | S-4-2 | 산업재해율 |
| | 인권 | S-5-1 | 인권정책 수립 |
| | | S-5-2 | 인권 리스크 평가 |
| | 동반성장 | S-6-1 | 협력사 ESG 경영 |
| | | S-6-2 | 협력사 ESG 지원 |
| | | S-6-3 | 협력사 ESG 협약사항 |
| | 지역사회 | S-7-1 | 전략적 사회공헌 |
| | | S-7-2 | 구성원 봉사참여 |
| | 정보보호 | S-8-1 |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
| | | S-8-2 |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
| 사회 법/규제 위반 | S-9-1 | 사회 법/규제 위반 | |
| 지배구조 | 이사회 구성 | G-1-1 |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
| | | G-1-2 | 사외이사 비율 |
| | | G-1-3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
| | | G-1-4 | 이사회 성별 다양성 |
| | | G-1-5 | 사외이사 전문성 |
| | 이사회 활동 | G-2-1 | 전체 이사 출석률 |
| | | G-2-2 | 사내이사 출석률 |
| | | G-2-3 | 이사회 산하 위원회 |
| | | G-2-4 | 이사회 안건 처리 |
| | 주주권리 | G-3-1 | 주주총회 소집 공고 |
| | | G-3-2 | 주주총회 개최일 |
| | | G-3-3 |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
| | | G-3-4 | 배당정책 및 이행 |
| | 윤리경영 | G-4-1 |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
| | 감사기구 | G-5-1 | 내부감사부서 설치 |
| | | G-5-2 | 감사기구 전문성(감사기구 내 회계/재무전문가) |
| |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 G-6-1 |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

자료: K-ESG가이드라인, 2021

2. 사회성과인센티브

□ SPC 배경 및 취지

-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금전적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인센티브는 기업이 실제 만들어 낸 결과, 즉 사회적가치에 비례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기구가 작동하는 시장시스템에 가깝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뚜렷한 정의와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을 추구하도록 촉진하고자 한다.
- 사회적기업이 인센티브를 받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은 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성장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투자자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를 미래의 현금흐름과 통합하여 인식하게 됨으로써 매력적인 투자처의 발굴이 용이하다. 나아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측정하여 기업별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업의 가치평가와 연계하면 사회적 자본시장에서도 새로운 기업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새로운 시장시스템은 투자자에게 신뢰성 있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사회적 자본시장의 활성화는 혁신적인 사회적 창업을 촉진하게 된다. 결국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인센티브에만 머무는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더 키우기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선순환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성과인센티브가 탄생하였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SK 최태원 회장이 제안한 새로운 아이디어인 SPC(Social Progress Credit)를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적용한 것이다. 측정과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여 투자와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선순환, 즉,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SPC의 궁극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학계, SK가 공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2015년 4월 35개 사회적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2016년 4월에 44개 참여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에 기반하여 첫 인센티브를 받은 이래 점차 참여 기업 수가 늘어나 지금은 약 400 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가장 큰 규모의 성과측정사업이자 민간차원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화폐화 방식의 사회적가치 측정

- 사회적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많은 조직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 지표들을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또한 기업의 미션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기업진흥원과 같이 외부 기관의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성과 수준을 판단하기도 한다. 사회적기업은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 유형에 따라 <그림1-2>와 같이 정량/정성적인 다양한 측정 지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이 중 정량적 지표로 측정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한다.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다.

- 첫째, 다종다양한 사회성과의 비교 평가가 가능하다.
 사회적기업은 단일 미션을 가지고 있더라도 고용, 환경, 교육, 사회복지 등 각기 다른 영역의 사회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모든 측정 지표는 측정단위가 동일하고, 각 지표마다 비교 값이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다. 성격이 다른 다양한 지표들을 ‘화폐가치’라는 단일한 단위로 환산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다.
- 둘째, 사회성과를 기업가치에 반영하여, 시장의 가격기구와 통합할 수 있다.
 사회성과가 화폐가치로 측정되면, 향후에는 사회적가치가 제품/서비스 또는 기업가치에 반영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성과가 시장의 가격기구에 내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지원이나 투자기회를 형성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셋째, 측정의 반복 적용이 용이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화폐가치 환산의 기본 원칙과 표준식에 따라 사회성과를 반복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서 측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성과 화폐단위 측정방식은 직접적으로 사회성과를 재는 방법은 아니다. 화폐단위 측정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인과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크기에 대한 정량·정성적인 검증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을 추정함으로써 성과의 단위를 일치시켜 다양한 유형의 사회성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 **사회성과 측정 원칙**

- 이해관계자 회계 원리
 - 기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며, 기업 활동이 각 이해관계자에게 발생시킨 편익과 비용을 합산하여 사회성과를 측정함
- 보수성의 원칙
 -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회성과만을 인정하며, 명확한 기준값(proxy)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회성과로 인정하며,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사용함
- 준거시장 기준의 원칙

- 현실적인 시장가격(baseline)을 추정하여 화폐가치로 환산하며, 사회적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을 가진 준거시장에서의 가격을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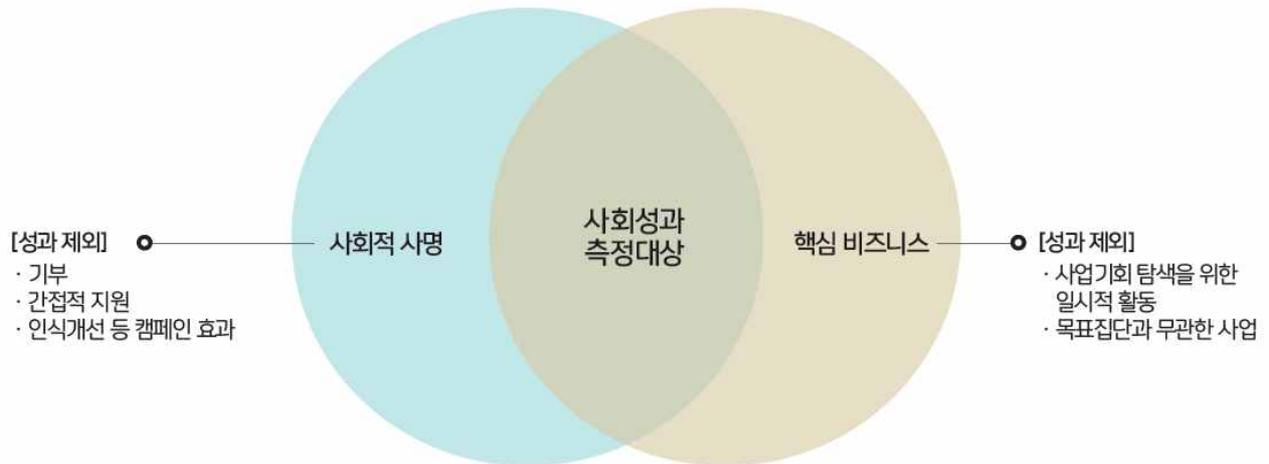
| 구분 | 가격추정방식 | 내용 | 적용순위 |
|----------|---|--|------|
| 가격 기반 | 일반시장가격 (average pri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서비스의 평균적인 시장가격 • 업계 평균가격, 법정 가격 등 공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설정 | 1 |
| | 공급의사가가격 (willingness to suppl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경우, 동종 업종의 공급자가 동일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받고자 하는 가격 • 통상 기존의 수익률 또는 수익액이 보장되는 지점에서 공급의사가 발생한다고 간주함 • 해당 산업의 생산비, 수익률 등에 대한 국가/산업 단위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추정 | 2 |
| | 지불의사가가격 (willingness to pa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경우, 해당 사회문제의 당사자나 문제의 해결에 책임이 있는 잠재적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 기존 솔루션의 사회문제 해결 단위당 소요 비용을 지불의사가가격으로 간주 | 3 |
| 비용 기반 | 대체방식 비용 (alternative cos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제공하는 솔루션이 없었을 경우, 기존의 솔루션에 사회가 지불했을 가격(비용) | 4 |
| | 추가투입비용 (additional cost as minimum pri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서비스에 대한 가격 및 원가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원가 투입분을 사회성과의 가격으로 간주 • 주요 서비스에 인적 서비스가 부가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 | 제한적용 |

<표> 준거시장에 근거한 가격추정방식

□ 사회성과의 측정 범위

○ 사명부합성

- 기업의 사회적 사명(mission)과 핵심 비즈니스와 직접 관련된 사회성과만 측정하며, 부수적, 간접적 성과는 배제함



<그림> 사회성과 측정대상

○ 결과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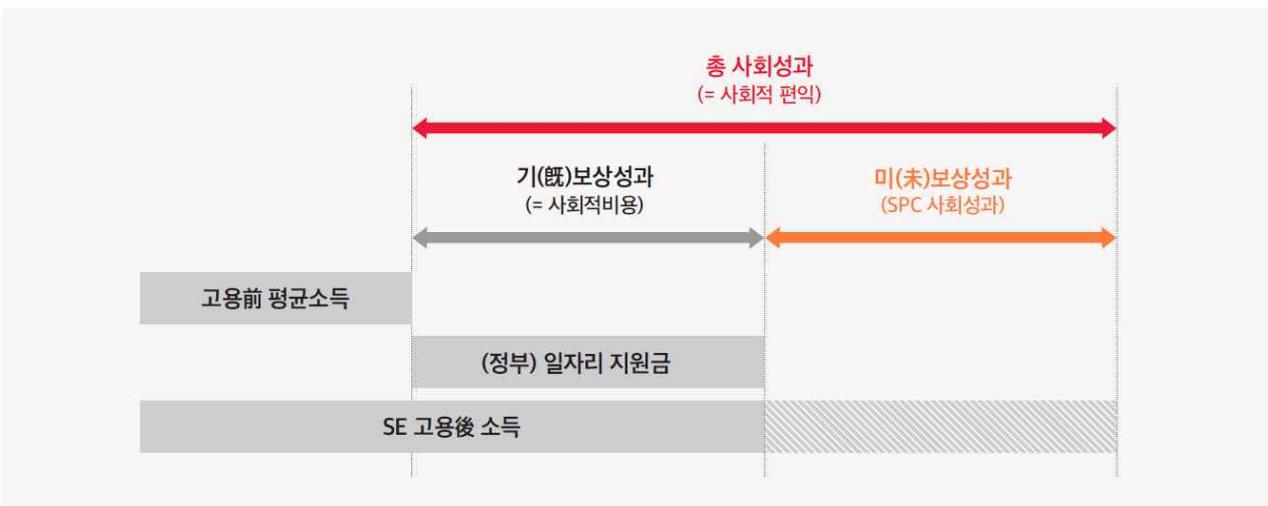
- 기업활동을 통한 수혜자의 직접적인 변화를 사회성으로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결과(outcome)만을 측정



<그림> 논리모형 기반 사회성과 측정범위

○ 미보상성

-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 중 가격기구 또는 제도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보상 성과만을 측정함



<그림> 내부공정성과 사례로 보는 미보상 성과의 개념

○ 사회성과의 4가지 영역 및 세부 성과지표

| 사회성과 영역 | 사회성과 창출방식 | 세부 성과지표 |
|-----------|--------------------------------------|-----------------------------|
| 제품/서비스 성과 | 동일 제품의 할인/무료 제공 | 할인무료 제공 |
| | 시장배제집단을 위한 특화 제품 및 서비스 제공 | |
| | 사회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 |
| | 추가 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 | 추가 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 |
| 내부공정 성과 | 취약계층 고용 | 직접고용 |
| |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반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교육 및 이직기회 제공 | 경과성 일자리 |
| |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돌봄서비스 대체 | 중증 돌봄 대체 |
| 외부공정 성과 | 소농의 소득 증진 | 소농거래 |
| | 해외 소농의 소득 증진 | 공정무역 - 농산물 |
| | 취약국가 생산자의 추가 거래 기회 제공 | 공정무역 - 비농산물 |
| | 취약지역 주민 소득 증진 | 공정여행 - 해외, 국내 |
| |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액 증대 | 크라우드펀딩 - 기부형, 리워드형 |
| | 창업지원 등을 통한 소득 증진 |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 |
| | 취약생산자의 추가 거래 기회 제공 | 취약생산자와 거래 시 새로운 거래 기회 제공 |
| | 신진예술가와 작품 거래 | 문화예술 자산보호 |
| | 공익활동 지원 | 비영리 조직 지원 |
| | 공공예산 효율성 증대 |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
| | 취약생산자 소득 증진 | 취약그룹 불공정 거래 예방 |
| 환경 성과 |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 재사용 |
| | | 재제조 |
| | | 재활용 |
| | | 친환경 대체재료 |
| | | 친환경 프로세스 |
| | | 생태계 복원력 강화 |

<표> 사회성과 창출방식에 따른 성과영역별 세부지표

자료: 사회성과인센티브 매뉴얼, 2024

3.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SVI)

□ 사회적가치지표개요

- 사회적가치지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 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보다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 본 지표는 “조직이 우선으로 사회적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기제를 설정하고 이를 조직운영과 본질적인 사업 활동에 반영하며, 조직의 효율적인 인적·물적 자원 투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 방법” 등의 노력과 성과를 측정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판단기준 중에서 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면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만으로 구성하여 간소화함
- 또한 본 지표는 측정 및 평가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현장·조사자·전문가) 등의 감수를 통해 객관성을 제고하고 향후 지속적인 의견 청취로 개선·보완 추진

□ 사회적가치지표(SVI) 총괄표

| 관점 | 범주 | 영역 | 측정치표 | 배점 |
|----------------|-----------------|-------------------------|---------------------------------|-----------------|
| 사회적 성과 (60) | 조직 미션 (7) | 사회적 미션 (7) |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 2 |
| | | |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 5 |
| | 사업 활동 (35) | 주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15) |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비계량 지표) | 15 |
| | | |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 5 |
| | | | |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 | 조직 운영 (18) | 사회적 목적 재투자 (10) |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비계량 지표) | 10 |
| | | | 운영의 민주성 (5) |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
| | 근로자 지향성 (13) | 8. 근로자 임금수준 | | 8 |
| | |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 | 5 |
| 경제적 성과 (30) | 재정 성과 (30) |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25) | 10. 고용성과 | 10 |
| | | | 11. 매출성과 | 10 |
| | | | 12. 영업성과 | 5 |
| | | 노동성과 (5) | 13. 노동생산성 | 5 |
| 혁신 성과 (10) | 기업 혁신 (10) | 기업 활동의 혁신성 (10) | 14. 혁신노력도 (비계량 지표) | 10 |
| 계 | | 14개 지표 | | 100 |

자료, 2024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Ⅱ. 추천형 ESG+ 지표

II. 춘천형 ESG+ 지표

□ ESG 개념 및 중요성

- (개념)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경영 활동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

*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

(「지속가능발전법」2020.5.26. 제정)

- (환경: Environment)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전반을 포괄하는 요소들이 포함되며,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
- (사회: Social)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의 요소가 포함되고, 최근 인권, 안전·보건 등에 대한 이슈가 화두
- (지배구조: Governance)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주주 및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영역으로 이사회의 다양성, 임원 급여, 윤리경영 및 감사기구 등이 강조
- (중요성) 최근 ESG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
 - (기업목적 측면) ESG는 미래사회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로 기업의 목적에 내재화 되어야 하는 필수적 요소
 - (자본조달 측면) ESG가 다양한 분야의 투자자들의 핵심 가치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기업의 자본조달 측면에서 ESG는 필수적 관리 요소
 - (지속가능 측면) 지속가능성의 포괄적인 개념 하에서 발전한 ESG 요소들은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필수적

□ 춘천형 ESG+지표 개발 목적 및 필요성

- 기업의 ESG 경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되고 있으나, ESG 경영의 적용이나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단위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은 ESG 경영 도입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업활동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주체로 기존의 ESG 지표를 적용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만이 지닌 고유한 사회성과를 드러 낼 수 없다는 한계지점도 있음

○ 이에,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를 고려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성과를 드러 낼 수 있는 추천형 ESG+ 지표를 개발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돕고자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외부 기관과의 ESG 파트너십을 구축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추천형 ESG+ 지표 활용 계획**

○ (ESG 경영 내부관리) 추천형 ESG+ 지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비재무적 요소로 기업이 내부적으로 이를 관리 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리

○ (사회적가치 측정 대응) 추천형 ESG+ 지표를 관리함으로써 SVI 및 SPC 등 사회적가치 측정지표를 함께 관리 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ESG 친화적 시장 연계) 기업의 ESG 보고서를 기반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ESG 친화적 시장을 발굴 및 거래 연결 추진 하고자 하며, 사회적경제 시장기획자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고자 함

○ (ESG 투자 기금 연계) 장기 과제로 ESG 투자기금을 연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 **추천형 ESG+ 지표 구성 방향 개요**

○ 추천형 ESG+ 지표는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ESG 지표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2021년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중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지표를 기반으로 두고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부각 시킬 수 있도록 (재)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사회성과를 화폐로 도출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SPC)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재구성 하였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K-ESG 지표 중 중소기업에 적합한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②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강조 할 수 있도록 사회성과인센티브 방식을 적용③ ESG+ 관리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가치지표(SVI)에 일정 대응 할 수 있도록 구성 |
|---|

○ 추천형 ESG+ 지표는 영역-범주-진단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5개 영역에는 ESG경영정책, 사회적가치총괄, 환경, 사회, 거버넌스로서의 구조로 7개 범주와 20(19)개 진단항목으로 설계되었음. 이 중 환경 영역은 필수지표 2개와 선택지표 1개로 구성되어 총 19개의 진단항목을 측정하도록 설계 되어 있음.

○ 각각의 진단항목별로 측정 기준이 별도 존재하며 진단항목별 총 배점은 100점이며, 전체 진단항목에 배점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음

□ 춘천형 ESG+ 지표

| 춘천형 ESG+ 지표 | | | | |
|-------------------------|---|---------------------------|--------------|---|
| 영역(5) | 범주(7) | 진단항목(20) | 배점 비율 적용 (%) | |
| ESG/SV 경영 정책 (20) | ESG/SV 경영 전략 수립 및 관리 체계 운영 (20) | ESG/SV 경영 전략 수립 | 10 | |
| | | ESG/SV 경영 관리 체계 운영 | 10 | |
| 환경(E) (10) |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 (10) |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scope2) | 5 | |
| | | 에너지 사용량 | 3 | |
| | | 원부자재 사용량 | 택1 | 2 |
| | | 폐기물 배출량 | | 2 |
| 사회(S) (30) | 양질의 노동 (15) |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 3 | |
| | | 정규직 비율 | 3 | |
| | | 교육훈련비 | 3 | |
| | | 복리후생비 | 3 | |
| | | 산업재해율 | 3 | |
| | 다양성 및 양성평등 (7) | 취약계층 고용 비율 및 급여 비율 | 4 | |
| | | 여성 고용 비율 및 급여 비율 | 3 | |
| | 지역사회와 협력 (8) |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 3 | |
| | | 지역사회와의 협력 | 3 | |
| | | 구성원 봉사 참여 | 2 | |
| 거버넌스(G) (10) | 이사회 구성 및 활동 (10) | 사외이사 비율 | 3 | |
| | | 이사 전문성 | 3 | |
| | | 전체 이사 출석율 | 4 | |
| 사회적가치(SV) 창출(30) | 전략적 SV 창출 (미션,비즈니스연결) (30) | 화폐가치로 측정된 사회적/환경적 성과 | 30 | |

□ **추천형 ESG+ 지표와 사회적가치 측정 지표와의 연계**

| 추천형ESG+지표 | | | 지표연계 | |
|--------------|---------------------------|---------------------------|---|--|
| 영역 | 범주 | 진단항목 | SVI | SPC |
| ESG 경영 정책 | ESG/SV 경영 전략 수립 및 관리체계 운영 | ESG/SV 경영 전략 체계 수립 | 1.사회적가치 추구 여부 - 명시적으로 선언한 문서 | |
| | | ESG/SV 경영 관리 체계 운영 | 2.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 측정기준, 담당인력,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공유 | |
| E |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 |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scope2) | 14.혁신노력도 - 혁신의 결과 - 자원절감 / 환경보호 | 환경성과 |
| | | 에너지 사용량 | 14.혁신노력도 - 혁신의 결과 - 환경보호 | 환경성과 |
| | | 원부자재 사용량 | 14.혁신노력도 - 혁신의 결과 - 자원절감 / 환경보호 | 환경성과 |
| | | 폐기물 배출량 | 14.혁신노력도 - 혁신의 결과 - 자원절감 / 환경보호 | 환경성과 |
| S | 양질의 노동 |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 6.사회적 환원 노력도 - 조직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 부가적인 일자리 창출유무 고용성과 10.고용성과-고용성장률 | |
| | | 정규직 비율 | 3.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내부운영의 사회적가치 - 고용의 질 | |
| | | 교육훈련비 | 6.사회적환원 노력도 -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 교육훈련비 유무 9.근로자역량강화노력-1인당연평균교육훈련시간 | |
| | | 복리후생비 | 6.사회적 환원 노력도 - 조직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 구성원 성과급 유무 | |
| | | 산업재해율 | 14.혁신노력도 - 혁신의 결과 - 기타 | |
| | 다양성 및 양성평등 | 취약계층 고용 비율 및 급여 비율 | 3.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내부운영의 사회적가치 -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 | 내부공정성과 |
| | | 여성 고용 비율 및 급여 비율 | | |
| | 지역사회와 협력 |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 4.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 |
| | | 지역사회와의 협력 | 5.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
| | | 구성원 봉사참여 | 6.사회적환원 노력도 - 기타(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 주사업영역 외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활용한 내역 | 외부공정성과 |
| G | 이사회 구성 및 활동 | 사외이사 비율 | 7.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 의사결정 참여 비율 | |
| | | 이사 전문성 | 7.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 의사결정 참여 비율 | |
| | | 전체 이사 출석율 | 7.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 의사결정 참여 비율 | |
| 사회적가치 (SV)창출 | 전략적 SV 창출 | 화폐가치로 측정된 사회적환경적 성과 | 3.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내부운영의 사회적가치 - 사회적가치 실현노력 3.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생산단계에서발생되는 사회적가치/판매단계에서발생되는 사회적가치/이용자가활용 하여발생되는 사회적가치 6.사회적환원노력도-조직외부활동을위한수익의 활용 - 지역사회 재투자 및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의 금액합산 실적 14.혁신성과-혁신노력도-혁신의결과 | 4개 영역별 세부지표 검토후 선택 1.제품/서비스성과 2.내부공정성과 3.외부공정성과 4.환경성과 |

Ⅲ. 진단항목 정의서

1. ESG/SV 경영 전략 수립
2. ESG/SV 경영 관리 체계 운영
3. 전략적 사회적가치 창출 (미션,비즈니스연결)
4.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scope2)
5. 에너지 사용량
6. 원부자재 사용량
7. 폐기물 배출량
8.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9. 정규직 비율
10. 교육훈련비
11. 복리후생비
12. 산업재해율
13. 취약계층 고용 및 급여 비율
14. 여성 고용 및 급여 비율
15.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16. 지역사회와의 협력
17. 구성원 봉사참여
18. 사외이사 비율
19. 이사 전문성
20. 화폐가치로 측정된 사회적/환경적 성과

1. ESG/SV 경영 전략 수립

| 구분 |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1 | ESG 경영 정책 | ESG/SV 경영 전략 수립 및 관리 체계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 | ESG/SV 경영 전략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 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책임있는 ESG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조직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체계가 마련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 • 조직이 수립한 ESG 경영 전략 체계의 구체성과 내재화 수준을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 점검 | <p>조직의 지속가능경영 요소별(환경, 사회, 거버넌스)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영 전략 체계가 수립되었는지,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에 반영 되었는지 측정</p> <p>[데이터 원천] ESG경영 전략 체계도, 사업계획서 [데이터 기간] 직전년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p>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 기준 | <table border="1"> <tr> <td rowspan="2">환경 (1/3)</td> <td>요건1</td> <td>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을 조직의 미션에 제시하고 있는 경우</td> </tr> <tr> <td>요건2</td> <td>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을 조직의 비전에 제시하고 있는 경우</td> </tr> <tr> <td>사회 (1/3)</td> <td>요건3</td> <td>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을 조직의 핵심가치에 제시하고 있는 경우</td> </tr> <tr> <td rowspan="2">거버넌스 (1/3)</td> <td>요건4</td> <td>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을 조직의 추진전략에 제시하고 있는 경우</td> </tr> <tr> <td>요건5</td> <td>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을 조직의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td> </tr> </table> <p>*요소별(환경, 사회, 거버넌스) 각각 5개의 요건을 점검</p> <p>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3개 영역의 선택형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환경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3 + 사회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3 + 거버넌스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3</p> <table border="1"> <tr> <td>1개 충족</td> <td>2개 충족</td> <td>3개 충족</td> <td>4개 충족</td> <td>5개 충족</td> </tr> <tr> <td>20점</td> <td>40점</td> <td>60점</td> <td>80점</td> <td>100점</td> </tr> </table> | | | 환경 (1/3) | 요건1 | 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을 조직의 미션에 제시하고 있는 경우 | 요건2 | 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을 조직의 비전에 제시하고 있는 경우 | 사회 (1/3) | 요건3 | 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을 조직의 핵심가치에 제시하고 있는 경우 | 거버넌스 (1/3) | 요건4 | 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을 조직의 추진전략에 제시하고 있는 경우 | 요건5 | 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을 조직의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 1개 충족 | 2개 충족 | 3개 충족 | 4개 충족 | 5개 충족 | 20점 | 40점 | 60점 | 80점 | 100점 |
| 환경 (1/3) | 요건1 | 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을 조직의 미션에 제시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건2 | 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을 조직의 비전에 제시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 (1/3) | 요건3 | 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을 조직의 핵심가치에 제시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버넌스 (1/3) | 요건4 | 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을 조직의 추진전략에 제시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건5 | 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을 조직의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1개 충족 | 2개 충족 | 3개 충족 | 4개 충족 | 5개 충족 | | | | | | | | | | | | | | | | | | | | | | |
| 20점 | 40점 | 60점 | 80점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 SVI 대응 | 1.사회적가치 추구 여부 - 명시적으로 선언한 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2. ESG/SV 경영 관리 체계 운영

| 구분 |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1-1-2 | ESG 경영 정책 | ESG/SV 경영 전략 수립 및 관리 체계 운영 | | | | | | | | | | | | | | | | | | | |
| 항목 | ESG/SV 경영 관리 체계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 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책임있는 ESG경영을 수행하기 위해 ESG 경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자원을 배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 • 조직이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계획-실행-점검-피드백' 등 일련의 활동을 관리·평가·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 점검 | <p>조직의 지속가능경영 요소별(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리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별 성과 측정기준, 담당인력 및 조직, 결과공유 유무를 측정</p> <p>[데이터 원천] 사업계획서, 성과보고서, 공유결과 [데이터 기간] 직전년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p>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 기준 | <table border="1"> <tr> <td>요건1</td> <td>조직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측정을 위한 기준(지표)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td> </tr> <tr> <td>요건2</td> <td>조직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측정치표에 따라 그 결과를 관리하고 측정하고 있는 경우</td> </tr> <tr> <td>요건3</td> <td>조직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는 경우</td> </tr> <tr> <td>요건4</td> <td>조직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관련 활동에 평가·피드백을 하는 평가위원회가 마련되어 운영되는 경우</td> </tr> <tr> <td>요건5</td> <td>조직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내·외부에 공유한 경우</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p> <table border="1"> <tr> <td>1개 충족</td> <td>2개 충족</td> <td>3개 충족</td> <td>4개 충족</td> <td>5개 충족</td> </tr> <tr> <td>20점</td> <td>40점</td> <td>60점</td> <td>80점</td> <td>100점</td> </tr> </table> | | | 요건1 | 조직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측정을 위한 기준(지표)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 요건2 | 조직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측정치표에 따라 그 결과를 관리하고 측정하고 있는 경우 | 요건3 | 조직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는 경우 | 요건4 | 조직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관련 활동에 평가·피드백을 하는 평가위원회가 마련되어 운영되는 경우 | 요건5 | 조직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내·외부에 공유한 경우 | 1개 충족 | 2개 충족 | 3개 충족 | 4개 충족 | 5개 충족 | 20점 | 40점 | 60점 | 80점 | 100점 |
| 요건1 | 조직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측정을 위한 기준(지표)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요건2 | 조직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측정치표에 따라 그 결과를 관리하고 측정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요건3 | 조직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요건4 | 조직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관련 활동에 평가·피드백을 하는 평가위원회가 마련되어 운영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요건5 | 조직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내·외부에 공유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1개 충족 | 2개 충족 | 3개 충족 | 4개 충족 | 5개 충족 | | | | | | | | | | | | | | | | | | | |
| 20점 | 40점 | 60점 | 80점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SVI 대응 | 2.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 측정기준, 담당인력,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공유 | | | | | | | | | | | | | | | | | | | | | | |

3.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scope2)

| 구분 |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
|--------|---|--|-----|----------------|------|
| | | 2-1-1 | 환경 |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 | |
| 항목 |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scope2) | | | | |
| 항목 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Scope1 & Scope2)을 감축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이 직접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관리 및 개선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 | | | | |
| 성과 점검 | <p>지난 3년간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지 측정</p> <p>[데이터 원천] 전기사용량 - 한전온 홈페이지 https://online.kepco.co.kr/ 또는 한전파워플래너 앱 설치 후 조회 가스사용량 - 강원도시가스 홈페이지 https://www.skens.com/gangwon/main/index.do# 또는 강원도시가스 카카오톡채널추가 후 최근 사용량 조회 가능 수도사용량 - 춘천시 상하수도 요금 조회 납부 사이트 http://waterpay.chuncheon.go.kr/waterpay/ncoe/index.do 에서 확인 가능</p> <p>[데이터 기간] 최근 3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N/A</p> | | | | |
| 점검 기준 | 1단계 | 온실가스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 | | |
| | 2단계 | 직전 1년 재생 온실가스배출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 | | |
| | 3단계 | 직전 3년 온실가스배출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지난 3개년 온실가스배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경우 | | | |
| | 4단계 | 지난 3개년 온실가스배출량이 변동 없는 경우 | | | |
| | 5단계 | 지난 3개년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 | |
| | *이후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원단위(사용량/매출액)로 환산하여 적용 가능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SVI 대응 | 14.혁신노력도 - 혁신의 결과 - 환경보호 | | | | |

4. 에너지 사용량

| 구분 |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2-1-2 | 환경 |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 | | | | | | | | | | | | | | | | | | | |
| 항목 | 에너지 사용량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 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제(사업장 등) 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에너지 사용 총량을 절감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이 발생시키는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관리 및 개선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 점검 | <p>지난 3년간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지 측정</p> <p>[데이터 원천] 전기사용량 - 한전온 홈페이지 https://online.kepco.co.kr/ 또는 한전파워플래너 앱 설치 후 조회 가스사용량 - 강원도시가스 홈페이지 https://www.skens.com/gangwon/main/index.do# 또는 강원도시가스 카카오톡채널추가 후 최근 사용량 조회 가능</p> <p>[데이터 기간] 최근 3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N/A</p>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 기준 |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직전 1년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직전 3년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지난 3개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경우</td> </tr> <tr> <td>4단계</td> <td>지난 3개년 에너지 사용량이 변동 없는 경우</td> </tr> <tr> <td>5단계</td> <td>지난 3개년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td> </tr> </table> <p>*이후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원단위(사용량/매출액)로 환산하여 적용 가능</p>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r> <tr> <td>0점</td> <td>25점</td> <td>50점</td> <td>75점</td> <td>100점</td> </tr> </table> | | | 1단계 |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 2단계 | 직전 1년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 3단계 | 직전 3년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지난 3개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경우 | 4단계 | 지난 3개년 에너지 사용량이 변동 없는 경우 | 5단계 | 지난 3개년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1단계 |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직전 1년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직전 3년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지난 3개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지난 3개년 에너지 사용량이 변동 없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지난 3개년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 | | | | | | | | | | | | | | | |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SVI 대응 | 14.혁신노력도 - 혁신의 결과 - 자원절감 / 환경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5. 원부자재 사용량

| 구분 |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2-1-3 | 환경 |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 | | | | | | | | | | | | | | | | | | | |
| 항목 | 원부자재 사용량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 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으로부터 가져온 원부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 규모나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가능성이 높은 원단위(매출액) 개념을 기반으로 원부자재 사용량을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 점검 | <p>조직의 지난 3개년 간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지 측정</p> <p>[데이터원천] 조직의 원부자재 사용량 데이터 [데이터기간] 최근 3개 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산식] 총 원단위 원부자재 사용량 = 총 원부자재 사용량/매출액</p>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 기준 |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원부자재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직전 1년 원부자재 사용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직전 3년 원부자재 사용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지난 3개년 원부자재 사용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경우</td> </tr> <tr> <td>4단계</td> <td>지난 3개년 원부자재 사용량이 변동 없는 경우</td> </tr> <tr> <td>5단계</td> <td>지난 3개년 원부자재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td> </tr> </table> <p>*이후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원단위(사용량/매출액)로 환산하여 적용 가능</p>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r> <tr> <td>0점</td> <td>25점</td> <td>50점</td> <td>75점</td> <td>100점</td> </tr> </table> | | | 1단계 | 원부자재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 2단계 | 직전 1년 원부자재 사용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 3단계 | 직전 3년 원부자재 사용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지난 3개년 원부자재 사용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경우 | 4단계 | 지난 3개년 원부자재 사용량이 변동 없는 경우 | 5단계 | 지난 3개년 원부자재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1단계 | 원부자재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직전 1년 원부자재 사용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직전 3년 원부자재 사용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지난 3개년 원부자재 사용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지난 3개년 원부자재 사용량이 변동 없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지난 3개년 원부자재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 | | | | | | | | | | | | | | | |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SVI 대응 | 14.혁신노력도 - 혁신의 결과 - 자원절감 / 환경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6. 폐기물 배출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4 | 환경 |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 | 폐기물 배출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 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사업 및 영업 활동(ex. 연구개발, 제품 생산/가공/포장 등 포함, 소비자가 사용 이후 폐기한 폐제품은 제외)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을 저감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관리 및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 점검 | <p>지난 3개년 간 폐기물 배출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지 측정</p> <p>[데이터원천] 조직의 폐기물 배출량 데이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p> <p>[데이터기간] 최근 3개 회계연도</p> <p>[데이터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p> <p>[데이터산식] N/A</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 기준 |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 colspan="3">폐기물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 colspan="3">직전 1년 폐기물 배출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 colspan="3">직전 3년 폐기물 배출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지난 3개년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경우</td> </tr> <tr> <td>4단계</td> <td colspan="3">지난 3개년 폐기물 배출량이 변동 없는 경우</td> </tr> <tr> <td>5단계</td> <td colspan="3">지난 3개년 폐기물 배출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td> </tr> </table> <p>*이후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원단위(사용량/매출액)로 환산하여 적용 가능</p>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r> <tr> <td>0점</td> <td>25점</td> <td>50점</td> <td>75점</td> <td>100점</td> </tr> </table> | | | 1단계 | 폐기물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 | | 2단계 | 직전 1년 폐기물 배출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 | | 3단계 | 직전 3년 폐기물 배출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지난 3개년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경우 | | | 4단계 | 지난 3개년 폐기물 배출량이 변동 없는 경우 | | | 5단계 | 지난 3개년 폐기물 배출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 1단계 | 폐기물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직전 1년 폐기물 배출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직전 3년 폐기물 배출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지난 3개년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지난 3개년 폐기물 배출량이 변동 없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지난 3개년 폐기물 배출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VI 대응 | 14.혁신노력도 - 혁신의 결과 - 자원절감 / 환경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 구분 |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1 | 사회 | 양질의 노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 |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 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신규 채용을 통해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축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 • 조직이 창출한 부가 가치를 채용에 투자하고 있는지, 조직의 고용 규모가 안정적인지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 점검 | <p>조직의 고용 규모가 동종 업종 대비 안정적이며 지난 2개년 간 신규 채용률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p> <p>[데이터 원천] 2개년 회계연도 말 고용보험내역, 고용인원 - 'SVI 측정 업무지침' 上 참고자료 고용성과</p> <p>[데이터 기간] 최근 2개 회계연도</p> <p>[데이터 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p> <p>[데이터 산식] 고용성장율 = (직전 2개년 총 근로자수 - 직전 1개년 총 근로자수) / 직전 1개년 총 근로자 수 × 100%</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 기준 | <table border="1"> <tr> <td rowspan="5">고용 인원 (1/2)</td> <td>1단계</td> <td colspan="3">고용성과가 동종업종 대비 0~20%미만인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 colspan="3">고용성과가 동종업종 대비 20%이상~40%미만인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 colspan="3">고용성과가 동종업종 대비 40%이상~60%미만인 경우</td> </tr> <tr> <td>4단계</td> <td colspan="3">고용성과가 동종업종 대비 60%이상~80%미만인 경우</td> </tr> <tr> <td>5단계</td> <td colspan="3">고용성과가 동종업종 대비 80%이상인 경우</td> </tr> <tr> <td rowspan="5">고용 성장율 (1/2)</td> <td>1단계</td> <td colspan="3">전년대비 고용성장율이 (-)인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 colspan="3">전년대비 고용성장율이 동일한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 colspan="3">전년대비 고용성장율이 10%이하로 성장한 경우</td> </tr> <tr> <td>4단계</td> <td colspan="3">전년대비 고용성장율이 10%초과 20%이하로 성장한 경우</td> </tr> <tr> <td>5단계</td> <td colspan="3">전년대비 고용성장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고용인원 기준에 따른 점수 × 1/2 + 고용성장율 기준에 따른 점수 × 1/2</p>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r> <tr> <td>0점</td> <td>25점</td> <td>50점</td> <td>75점</td> <td>100점</td> </tr> </table> | | | 고용 인원 (1/2) | 1단계 | 고용성과가 동종업종 대비 0~20%미만인 경우 | | | 2단계 | 고용성과가 동종업종 대비 20%이상~40%미만인 경우 | | | 3단계 | 고용성과가 동종업종 대비 40%이상~60%미만인 경우 | | | 4단계 | 고용성과가 동종업종 대비 60%이상~80%미만인 경우 | | | 5단계 | 고용성과가 동종업종 대비 80%이상인 경우 | | | 고용 성장율 (1/2) | 1단계 | 전년대비 고용성장율이 (-)인 경우 | | | 2단계 | 전년대비 고용성장율이 동일한 경우 | | | 3단계 | 전년대비 고용성장율이 10%이하로 성장한 경우 | | | 4단계 | 전년대비 고용성장율이 10%초과 20%이하로 성장한 경우 | | | 5단계 | 전년대비 고용성장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고용 인원 (1/2) | 1단계 | 고용성과가 동종업종 대비 0~20%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고용성과가 동종업종 대비 20%이상~40%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고용성과가 동종업종 대비 40%이상~60%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고용성과가 동종업종 대비 60%이상~80%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고용성과가 동종업종 대비 80%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 성장율 (1/2) | 1단계 | 전년대비 고용성장율이 (-)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전년대비 고용성장율이 동일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전년대비 고용성장율이 10%이하로 성장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전년대비 고용성장율이 10%초과 20%이하로 성장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전년대비 고용성장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VI 대응 | <p>6.사회적 환원 노력도 - 조직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 부가적인 일자리 창출유무</p> <p>10.고용성과-고용성장율</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 성과]

(단위: 명)

| 주업종 | 0% 20% 미만 | 2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100% |
|-------------------------------|--------------|------------------|------------------|------------------|----------------|
| 농업, 임업 및 어업(A) | 2 미만 | 2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 5 이상 8 미만 | 8 이상 |
| 제조업(C) | 4 미만 | 4 이상 7 미만 | 7 이상 12 미만 | 1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 2 미만 | 2 이상 4 미만 | 4 이상 7 미만 | 7 이상 12 미만 | 12 이상 |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 12 미만 | 12 이상 31 미만 | 31 이상 39 미만 | 39 이상 48 미만 | 48 이상 |
| 건설업(F) | 3 미만 | 3 이상 5 미만 | 5 이상 7 미만 | 7 이상 11 미만 | 11 이상 |
| 도매 및 소매업(G) | 3 미만 | 3 이상 5 미만 | 5 이상 7 미만 | 7 이상 15 미만 | 15 이상 |
| 운수업(H) | 4 미만 | 4 이상 6 미만 | 6 이상 13 미만 | 13 이상 23 미만 | 23 이상 |
| 숙박 및 음식점업(I) | 3 미만 | 3 이상 5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13 미만 | 13 이상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 3 미만 | 3 이상 5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12 미만 | 12 이상 |
|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2 미만 | 2 이상 4 미만 | 4 이상 8 미만 | 8 이상 11 미만 | 11 이상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 3 미만 | 3 이상 7 미만 | 7 이상 10 미만 | 10 이상 17 미만 | 17 이상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 5 미만 | 5 이상 10 미만 | 10 이상 18 미만 | 18 이상 48 미만 | 48 이상 |
| 교육 서비스업(P) | 2 미만 | 2 이상 4 미만 | 4 이상 6 미만 | 6 이상 9 미만 | 9 이상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O) | 6 미만 | 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42 미만 | 42 이상 98 미만 | 98 이상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2 미만 | 2 이상 4 미만 | 4 이상 6 미만 | 6 이상 9 미만 | 9 이상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 4 미만 | 4 이상 6 미만 | 6 이상 8 미만 | 8 이상 14 미만 | 14 이상 |
| 전체 사회적기업 | 3 미만 | 3 이상 5 미만 | 5 이상 9 미만 | 9 이상 21 미만 | 21 이상 |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기준으로 측정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등급별 구간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5개 분야)
 - 광업(B), 금융 및 보험업(K),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8. 정규직 비율

| 구분 |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3-1-2 | 사회 | 양질의 노동 | | | | | | | | | | | | | | | | | | | |
| 항목 | 정규직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 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확대가 조직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조직이 정규직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고용안정성 증가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확인 조직의 전체 인력 대비 정규직 비율을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 점검 | <p>국내외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규직 비율을 확인</p> <p>[데이터원천] 근로계약서, 근로자대장 [데이터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 [데이터산식] 정규직 비율 = (해당연도 말 기준 총 근로자 수 -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 해당연도 말 기준 총 근로자</p>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 기준 |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현황이 관리되지 않는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40% 이하인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40% 초과 60% 이하인 경우</td> </tr> <tr> <td>4단계</td> <td>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60% 초과 80% 이하인 경우</td> </tr> <tr> <td>5단계</td> <td>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r> <tr> <td>0점</td> <td>25점</td> <td>50점</td> <td>75점</td> <td>100점</td> </tr> </table> | | | 1단계 |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현황이 관리되지 않는 경우 | 2단계 |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40% 이하인 경우 | 3단계 |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40% 초과 60% 이하인 경우 | 4단계 |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60% 초과 80% 이하인 경우 | 5단계 |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1단계 |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현황이 관리되지 않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40% 이하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40% 초과 60% 이하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60% 초과 80% 이하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 | | | | | | | | | | | | | | | |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SVI 대응 | 3.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내부운영의 사회적가치 - 고용의 질 | | | | | | | | | | | | | | | | | | | | | | |

9. 교육 훈련비

| 구분 |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3-1-3 | 사회 | 양질의 노동 | | | | | | | | | | | | | | | | | | | |
| 항목 | 교육 훈련비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 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미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의 교육 및 훈련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 • 상대적 비교가능성을 위해 구성원 수 기반의 1인당 교육훈련비와 교육훈련 시간을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 점검 | <p>조직의 1인당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시간 수준을 측정</p> <p>[데이터 원천] 교육훈련 지출 내역, 훈련 내역, 직전 회계연도 말 고용보험내역 [데이터 기간] 직전년도 [데이터 범위] 국내 사업장 [데이터 산식] 1인당 교육훈련비 = 직전 회계연도 교육 훈련 지출 비용 / 직전 회계연도 말 총 구성원 수 1인당 교육시간 = 직전 회계연도 교육 훈련 총 시간 / 직전 회계연도 말 총 구성원 수</p>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 기준 | 교육 훈련비 (1/2) | <table border="1"> <tr><td>1단계</td><td>1인당 교육훈련비 제공내역이 20만원 미만인 경우</td></tr> <tr><td>2단계</td><td>1인당 교육훈련비 제공내역이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인 경우</td></tr> <tr><td>3단계</td><td>1인당 교육훈련비 제공내역이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인 경우</td></tr> <tr><td>4단계</td><td>1인당 교육훈련비 제공내역이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인 경우</td></tr> <tr><td>5단계</td><td>1인당 교육훈련비 제공내역이 50만원 이상인 경우</td></tr> </table> | | | 1단계 | 1인당 교육훈련비 제공내역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2단계 | 1인당 교육훈련비 제공내역이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인 경우 | 3단계 | 1인당 교육훈련비 제공내역이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인 경우 | 4단계 | 1인당 교육훈련비 제공내역이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인 경우 | 5단계 | 1인당 교육훈련비 제공내역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1단계 | 1인당 교육훈련비 제공내역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1인당 교육훈련비 제공내역이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1인당 교육훈련비 제공내역이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1인당 교육훈련비 제공내역이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1인당 교육훈련비 제공내역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 시간 (1/2) | <table border="1"> <tr><td>1단계</td><td>1인당 교육훈련 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td></tr> <tr><td>2단계</td><td>1인당 교육훈련 시간이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인 경우</td></tr> <tr><td>3단계</td><td>1인당 교육훈련 시간이 10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인 경우</td></tr> <tr><td>4단계</td><td>1인당 교육훈련 시간이 15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인 경우</td></tr> <tr><td>5단계</td><td>1인당 교육훈련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td></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교육훈련비 기준에 따른 점수 × 1/2 + 교육시간 기준에 따른 점수 × 1/2</p>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r> <tr> <td>20점</td> <td>40점</td> <td>60점</td> <td>80점</td> <td>100점</td> </tr> </table> | | | 1단계 | 1인당 교육훈련 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 2단계 | 1인당 교육훈련 시간이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인 경우 | 3단계 | 1인당 교육훈련 시간이 10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인 경우 | 4단계 | 1인당 교육훈련 시간이 15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인 경우 | 5단계 | 1인당 교육훈련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20점 | 40점 | 60점 | 80점 | 100점 |
| 1단계 | 1인당 교육훈련 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1인당 교육훈련 시간이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1인당 교육훈련 시간이 10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1인당 교육훈련 시간이 15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1인당 교육훈련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 | | | | | | | | | | | | | | | | |
| 20점 | 40점 | 60점 | 80점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SVI 대응 | <p>6.사회적환원 노력도 -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 교육훈련비 유무</p> <p>9.근로자역량강화노력-1인당 연평균교육훈련시간</p> | | | | | | | | | | | | | | | | | | | | | | |

10. 복리 후생비

| 구분 |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3-1-4 | 사회 | 양질의 노동 | | | | | | | | | | | | | | | | | | | |
| 항목 | 복리 후생비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 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임직원의 업무환경 및 근무조건 개선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항목으로 법률상 강제성이 있는 법정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복리후생비를 확인 • 상대적 비교가능성을 위해 구성원 수 기반의 1인당 복리후생비를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 점검 | <p>조직의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을 측정</p> <p>[데이터 원천] 급여대장, 복리후생제공 지출 내역, 직전 회계연도 말 고용보험내역</p> <p>[데이터 기간] 직전년도</p> <p>[데이터 범위] 국내 사업장</p> <p>[데이터 산식] 1인당 복리후생비 = 직년 회계연도 복리후생비 / 직전 회계연도 말 총 구성원 수</p>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 기준 |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복리후생 제공 내역이 없을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복리후생비 제공 내역이 있으며 1인당 복리후생비 제공이 30만원 미만인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1인당 복리후생비 제공이 3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인 경우</td> </tr> <tr> <td>4단계</td> <td>1인당 복리후생비 제공이 60만원 이상 ~ 90만원 미만인 경우</td> </tr> <tr> <td>5단계</td> <td>1인당 복리후생비 제공이 90원 이상인 경우</td> </tr> </table> <p>*단 상황에 따라 전체 측정 결과의 분포 구간으로 사후 측정 가능함</p>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r> <tr> <td>0점</td> <td>25점</td> <td>50점</td> <td>75점</td> <td>100점</td> </tr> </table> | | | 1단계 | 복리후생 제공 내역이 없을 경우 | 2단계 | 복리후생비 제공 내역이 있으며 1인당 복리후생비 제공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3단계 | 1인당 복리후생비 제공이 3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인 경우 | 4단계 | 1인당 복리후생비 제공이 60만원 이상 ~ 90만원 미만인 경우 | 5단계 | 1인당 복리후생비 제공이 90원 이상인 경우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1단계 | 복리후생 제공 내역이 없을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복리후생비 제공 내역이 있으며 1인당 복리후생비 제공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1인당 복리후생비 제공이 3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1인당 복리후생비 제공이 60만원 이상 ~ 90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1인당 복리후생비 제공이 90원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 | | | | | | | | | | | | | | | |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SVI 대응 | 6.사회적 환원 노력도 - 조직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 구성원 성과급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11. 산업재해율

| 구분 |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3-1-5 | 사회 | 양질의 노동 | | | | | | | | | | | | | | | | | | | |
| 항목 | 산업재해율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 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중점과제 추진, 업무시스템 구축, 성과점검 및 평가 등 안전보건 추진체계가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 조직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 (국내외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율 추이와 산업 평균 비교/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 점검 | <p>조직의 지난 3개년 간 산업재해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지, 지난 1개년 산업재해율이 미만인지 측정</p> <p>[데이터 원천]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확인서발급 시스템' 확인서 발급 안내 https://certi.kosha.or.kr/Minwon/Etc/guide0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 참고</p> <p>[데이터 기간] 최근 3개 회계연도</p> <p>[데이터 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p> <p>[데이터 산식] 산업재해율 = (재해자 수 / 연 평균 근로자 수) × 100</p>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 기준 | <table border="1"> <tr> <td rowspan="3">현재 수준 (1/2)</td> <td>1단계</td> <td>직전 1개년 산업재해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초과</td> </tr> <tr> <td>2단계</td> <td>직전 1개년 산업재해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동일</td> </tr> <tr> <td>3단계</td> <td>직전 1개년 산업재해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미만</td> </tr> <tr> <td rowspan="3">추세 (1/2)</td> <td>1단계</td> <td>지난 3개년 산업재해율 증가 추세</td> </tr> <tr> <td>2단계</td> <td>지난 3개년 산업재해율 변동 없음</td> </tr> <tr> <td>3단계</td> <td>지난 5개년 산업재해율 감소 추세</td> </tr> </table> <p>*지난 3개년 간 산업재해율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0점 적용</p>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현재수준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2 + 추세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 1/2</p>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r> <tr> <td>0점</td> <td>50점</td> <td>100점</td> </tr> </table> | | | 현재 수준 (1/2) | 1단계 | 직전 1개년 산업재해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초과 | 2단계 | 직전 1개년 산업재해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동일 | 3단계 | 직전 1개년 산업재해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미만 | 추세 (1/2) | 1단계 | 지난 3개년 산업재해율 증가 추세 | 2단계 | 지난 3개년 산업재해율 변동 없음 | 3단계 | 지난 5개년 산업재해율 감소 추세 | 1단계 | 2단계 | 3단계 | 0점 | 50점 | 100점 |
| 현재 수준 (1/2) | 1단계 | 직전 1개년 산업재해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직전 1개년 산업재해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동일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직전 1개년 산업재해율 당해연도 산업평균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추세 (1/2) | 1단계 | 지난 3개년 산업재해율 증가 추세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지난 3개년 산업재해율 변동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지난 5개년 산업재해율 감소 추세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0점 | 50점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SVI 대응 | 14.혁신노력도 - 혁신의 결과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12. 취약계층 고용 및 급여 비율

| 구분 |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 | | | |
|--|---|--|-----|--|--------------------|--|---|---|------------------|
| | | 3-2-1 | 사회 | 다양성 및 양성평등 | | | | | |
| 항목 | 취약계층 고용 | | | | | | | | |
| 항목 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다양한 사회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용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자 등)의 사회참여에 기여하는 수준을 점검 • 상대적 비교가능성을 위해 취약계층 고용율은 업종별로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점검 • 취약계층 급여비율은 조직의 평균 급여액 대비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자 등)의 급여 차이를 확인으로써,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취약계층 1인 평균 급여액'을 점검 | | | | | | | | |
| 성과 점검 | <p>[데이터원천] 직전 회계연도 말 고용보험내역, 취약계층 명부, 'SVI측정 업무 지침' 上 참고자료2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p> <p>*취약계층 범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p> <p>[데이터기간] 직전년도</p> <p>[데이터범위] 국내 사업장</p> <p>[데이터산식] 취약계층 고용비율 = 직전 회계연도 말 취약계층 수 / 직전 회계연도 말 총 근로자 수</p> <p>취약계층 급여 비율 = (직전 회계연도 취약계층 1인 평균 급여액 / 직전연도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 100</p> | | | | | | | | |
| 점검 기준 | 취약계층 고용비율 (1/2) |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이 없는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비율 1명 이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 중위값 미만</td> </tr> <tr> <td>3단계</td> <td>취약계층 고용비율 중위값 이상</td> </tr> </table> | | 1단계 |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이 없는 경우 | 2단계 |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비율 1명 이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 중위값 미만 | 3단계 | 취약계층 고용비율 중위값 이상 |
| | 1단계 |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이 없는 경우 | | | | | | | |
| 2단계 |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비율 1명 이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 중위값 미만 | | | | | | | | |
| 3단계 | 취약계층 고용비율 중위값 이상 | | | | | | | | |
| 취약계층 급여비율 (1/2) |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취약계층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60%이하인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취약계층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60% 초과 ~ 80% 이하인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취약계층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td> </tr> </table> | | 1단계 |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취약계층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60%이하인 경우 | 2단계 |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취약계층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60% 초과 ~ 80% 이하인 경우 | 3단계 |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취약계층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 |
| 1단계 |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취약계층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60%이하인 경우 | | | | | | | | |
| 2단계 |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취약계층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60% 초과 ~ 80% 이하인 경우 | | | | | | | | |
| 3단계 |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취약계층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 | | | | | | | |
|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p>*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p> <p>= 취약계층 고용비율 기준에 따른 점수 × 1/2 + 취약계층 급여비율 기준에 따른 점수 × 1/2</p>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r> <tr> <td>0점</td> <td>50점</td> <td>100점</td> </tr> </table>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0점 | 50점 | 100점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 | | | |
| 0점 | 50점 | 100점 | | | | | | | |
| SVI 대응 | 3.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내부운영의 사회적가치 -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 | | | | | | | | |

[취약계층 고용비율 중위 값]

(단위: %, 원)

| | 업종 분류 | 취약계층 고용비율 중위 값 | 취약계층 평균시급 중위 값 |
|-------------------|----------------------------|-------------------|-------------------|
| 1 | 농업, 임업 및 어업(A) | 66.7% | 11,354 |
| 2 | 제조업(C) | 64.3% | 11,521 |
| 3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 72.6% | 12,673 |
| 4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 50.0% | 24,770 |
| 5 | 건설업(F) | 60.0% | 12,673 |
| 6 | 도매 및 소매업(G) | 57.1% | 12,204 |
| 7 | 운수업(H) | 60.8% | 12,845 |
| 8 | 숙박 및 음식점업(I) | 66.7% | 11,905 |
| 9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 50.0% | 12,097 |
| 10 |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37.5% | 14,401 |
| 11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 50.0% | 12,673 |
| 12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 77.5% | 12,223 |
| 13 | 교육 서비스업(P) | 50.0% | 12,097 |
| 14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 73.8% | 12,358 |
| 15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50.0% | 12,064 |
| 16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 65.2% | 11,642 |
| 전체 사회적기업** | | 63.6% | 12,083 |

※ 상기 업종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기준으로 측정

[취약계층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마. 노숙인
 -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차. 보호종료아동
 - 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이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 포함

[취약계층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 ① 가구 월평균 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별 확인 기준
 - 근로소득: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액)
-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
| '23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 2,782,902 | 4,601,181 | 6,559,520 | 7,956,449 | 8,895,998 |
| 60% | 1,669,741 | 2,760,708 | 3,935,712 | 4,773,869 | 5,337,598 |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 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수료(이수증) 등
 -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 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증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 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신설>

-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인정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8.7.17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 여부를 판단
-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저소득'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저소득'자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18.5.1 고용된 자가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13. 여성 고용 및 급여 비율

| 구분 |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3-2-2 | 사회 | 다양성 및 양성평등 | | | | | | | | | | | | | | | | | | | |
| 항목 | 여성 고용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 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다양한 사회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용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성별 차이의 사유로 급여 지급에 차별을 두는 인사제도, 고용관행이 있는지 확인 • 조직의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과의 급여 차이를 확인하는 항목 • 여성 급여 비율은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을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 점검 | <p>[데이터 원천] 직전 회계연도 말 고용보험내역, 직전 회계연도 말 급여명세</p> <p>[데이터 기간] 직전년도</p> <p>[데이터 범위] 국내 사업장</p> <p>[데이터 산식] 여성 고용비율 = 직전 회계연도 말 여성근로자 수 / 직전 회계연도 말 총 근로자 수</p> <p>여성 급여 비율 = (직전 회계연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 직전 회계연도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 100</p>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 기준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rowspan="3">취약계층 고용비율 (1/2)</td> <td>1단계</td> <td>여성 근로자 고용이 없는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여성 근로자 고용비율 1명 이상 ~ 30% 미만</td> </tr> <tr> <td>3단계</td> <td>여성 근로자 고용비율 30% 이상</td> </tr> <tr> <td rowspan="3">취약계층 급여비율 (1/2)</td> <td>1단계</td> <td>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70%이하인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70% 초과 ~ 90% 이하인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p>*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p> <p>= 여성 고용비율 기준에 따른 점수 × 1/2 + 여성 급여비율 기준에 따른 점수 × 1/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r> <tr> <td>0점</td> <td>50점</td> <td>100점</td> </tr> </table> | | | 취약계층 고용비율 (1/2) | 1단계 | 여성 근로자 고용이 없는 경우 | 2단계 |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 1명 이상 ~ 30% 미만 | 3단계 |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 30% 이상 | 취약계층 급여비율 (1/2) | 1단계 |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70%이하인 경우 | 2단계 |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70% 초과 ~ 90% 이하인 경우 | 3단계 |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 1단계 | 2단계 | 3단계 | 0점 | 50점 | 100점 |
| 취약계층 고용비율 (1/2) | 1단계 | 여성 근로자 고용이 없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 1명 이상 ~ 3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 3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취약계층 급여비율 (1/2) | 1단계 |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70%이하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70% 초과 ~ 90% 이하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0점 | 50점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SVI 대응 | 3.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내부운영의 사회적가치 -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 | | | | | | | | | | | | | | | | | | | | | | |

1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 구분 |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3-3-1 | 사회 | 지역사회와 협력 | | | | | | | | | | | | | | | | | | | |
| 항목 |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 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동반성장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상호협력 수준을 측정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 점검 | <p>[데이터 원천]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활동 결과 자료</p> <p>[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p> <p>[데이터 범위] N/A</p> <p>[데이터 산식] N/A</p>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 기준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1단계</td> <td>사회적경제 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음</td> </tr> <tr> <td>2단계</td> <td>1개이상 ~ 3개미만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td> </tr> <tr> <td>3단계</td> <td>3개이상 ~ 4개미만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td> </tr> <tr> <td>4단계</td> <td>4개이상 ~ 5개미만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td> </tr> <tr> <td>5단계</td> <td>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공식적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r> <tr> <td>0점</td> <td>25점</td> <td>50점</td> <td>75점</td> <td>100점</td> </tr> </table> | | | 1단계 | 사회적경제 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음 | 2단계 | 1개이상 ~ 3개미만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3단계 | 3개이상 ~ 4개미만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4단계 | 4개이상 ~ 5개미만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5단계 | 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공식적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1단계 | 사회적경제 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음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1개이상 ~ 3개미만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3개이상 ~ 4개미만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4개이상 ~ 5개미만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공식적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 | | | | | | | | | | | | | | | |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SVI 대응 | 4.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 | | | | | | | | | | | | | | | | | | | | | |

15. 지역사회와의 협력

| 구분 |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3-3-2 | 사회 | 지역사회와 협력 | | | | | | | | | | | | | | | | | | | |
| 항목 | 지역사회와의 협력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 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과 상호협력 수준을 측정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 점검 | <p>[데이터원천] 지역사회와의 협력활동 결과 자료 [데이터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p>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 기준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1단계</td> <td>2개 이하의 지역사회 조직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td> </tr> <tr> <td>2단계</td> <td>3개이상 ~ 5개미만의 지역사회 조직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td> </tr> <tr> <td>3단계</td> <td>5개이상 ~ 7개미만의 지역사회 조직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td> </tr> <tr> <td>4단계</td> <td>7개이상 ~ 9개미만의 지역사회 조직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td> </tr> <tr> <td>5단계</td> <td>9개 이상의 지역사회 조직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r> <tr> <td>0점</td> <td>25점</td> <td>50점</td> <td>75점</td> <td>100점</td> </tr> </table> | | | 1단계 | 2개 이하의 지역사회 조직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2단계 | 3개이상 ~ 5개미만의 지역사회 조직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3단계 | 5개이상 ~ 7개미만의 지역사회 조직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4단계 | 7개이상 ~ 9개미만의 지역사회 조직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5단계 | 9개 이상의 지역사회 조직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1단계 | 2개 이하의 지역사회 조직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3개이상 ~ 5개미만의 지역사회 조직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5개이상 ~ 7개미만의 지역사회 조직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7개이상 ~ 9개미만의 지역사회 조직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9개 이상의 지역사회 조직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 | | | | | | | | | | | | | | | |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SVI 대응 | 5.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 | | | | | | | | | | | | | | | | | | | | |

16. 구성원 봉사참여

| 구분 |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3-3-3 | 사회 | 지역사회와 협력 | | | | | | | | | | | | | | | | | | | |
| 항목 | 구성원 봉사참여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 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이 주요 사업영역 외에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인력.시간)을 활용한 내역(봉사활동.재능기부 등)유무와 수준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 점검 | <p>[데이터 원천] 봉사활동 및 재능기부 결과 자료</p> <p>[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p> <p>[데이터 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p> <p>[데이터 산식] N/A</p>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 기준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0%;">1단계</td> <td>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활용한 내역이 없는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 1회 제공한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한 경우</td> </tr> <tr> <td>4단계</td> <td>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자체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연 1회 제공한 경우</td> </tr> <tr> <td>5단계</td> <td>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자체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한 경우</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r> <tr> <td>0점</td> <td>25점</td> <td>50점</td> <td>75점</td> <td>100점</td> </tr> </table> | | | 1단계 |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활용한 내역이 없는 경우 | 2단계 |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 1회 제공한 경우 | 3단계 |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한 경우 | 4단계 |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자체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연 1회 제공한 경우 | 5단계 |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자체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한 경우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1단계 |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활용한 내역이 없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 1회 제공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자체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연 1회 제공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자체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 | | | | | | | | | | | | | | | |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SVI 대응 | 6.사회적환원 노력도 - 기타(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 주사업영역 외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활용한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17. 사외이사 비율

| 구분 |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
|--------|--|---------------------------------------|-------------|-----|------|
| | 4-1-1 | 거버넌스 | 이사회 구성 및 활동 | | |
| 항목 | 사외이사 비율 | | | | |
| 항목 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근로자·사외이사 제도를 통해 경영진 및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 기업경영 투명성의 제고, 소수주주의 권리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 • 경영진의 의사결정 행위를 견제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시각에서 기업 발전에 관한 제언을 할 수 있는 사외이사 비율이 충분한지 점검 | | | | |
| 성과 점검 | <p>조직과 독립적인 근로자·사외이사 비율을 측정</p> <p>*조직이 선임한 모든 근로자·사외이사(기타 비상무이사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단, 독립성 관련 사회적 논란이나 지적사항이 있는 사외이사는 해당 비율에서 제외한다</p> <p>[데이터 원천] 이사회 구성현황, 법인 등기부등본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p> | | | | |
| 점검 기준 | 1단계 | 이사 총원 대비 근로자·사외이사 비율이 10%미만인 경우 | | | |
| | 2단계 | 이사 총원 대비 근로자·사외이사 비율이 20%이상~30%미만인 경우 | | | |
| | 3단계 | 이사 총원 대비 근로자·사외이사 비율이 30%이상~40%미만인 경우 | | | |
| | 4단계 | 이사 총원 대비 근로자·사외이사 비율이 40%이상~50%미만인 경우 | | | |
| | 5단계 | 이사 총원 대비 근로자·사외이사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 | | |
| |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SVI 대응 | 7.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 의사결정 참여 비율 | | | | |

18. 이사 전문성

| 구분 |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4-1-2 | 거버넌스 | 이사회 구성 및 활동 | | | | | | | | | | | | | | | | | | | |
| 항목 | 이사 전문성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 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외이사가 조직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충분한 의견을 제공하거나, 경영진의 견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사외이사가 조직의 사업 방향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점검 (사외이사가 동종산업의 업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 점검 | <p>한국표준사업분류의 대분류(2자리 코드) 기준 동종산업에서 업무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 비율을 측정</p> <p>[데이터 원천] 사외이사 경력사항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p>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 기준 |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1명 이상인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1명이상~30%미만인 경우</td> </tr> <tr> <td>4단계</td> <td>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30%이상~40%미만인 경우</td> </tr> <tr> <td>5단계</td> <td>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50%이상인 경우</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r> <tr> <td>0점</td> <td>25점</td> <td>50점</td> <td>75점</td> <td>100점</td> </tr> </table> | | | 1단계 | 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 2단계 | 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1명 이상인 경우 | 3단계 | 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1명이상~30%미만인 경우 | 4단계 | 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30%이상~40%미만인 경우 | 5단계 | 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50%이상인 경우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1단계 | 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1명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1명이상~30%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30%이상~40%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50%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 | | | | | | | | | | | | | | | |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SVI 대응 | 7.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 의사결정 참여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19. 전체 이사 출석율

| 구분 |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3 | 거버넌스 | 이사회 구성 및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 | 전체 이사 출석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 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검토/심의/의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이사회 구성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조직의 성장 및 발전에 관한 제언, 주요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행위를 하고 있는지 확인 이사회 구성원별 출석율을 평균하여, 전체 이사 출석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지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 점검 | <p>직전 회계연도에 개최한 이사회에 대해, 개별 이사의 참석률을 평균하여 측정</p> <p>[데이터 원천] 이사회 구성 현황, 이사회 회의록 등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 = (출석한 전체 이사 인원 수 / 전체 이사 정원) / 이사회 개최 횟수</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 기준 | <table border="1"> <tr> <td rowspan="5">출 석 율</td> <td>1단계</td> <td colspan="3">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75%미만인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 colspan="3">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75%이상~85%미만인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 colspan="3">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85%이상~90%미만인 경우</td> </tr> <tr> <td>4단계</td> <td colspan="3">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90%이상~95%미만인 경우</td> </tr> <tr> <td>5단계</td> <td colspan="3">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95% 이상인 경우</td> </tr> <tr> <td rowspan="5">개 최 수</td> <td>1단계</td> <td colspan="3">직전년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 colspan="3">직전년도 이사회를 연1회 개최한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 colspan="3">직전년도 이사회를 연2회 개최한 경우</td> </tr> <tr> <td>4단계</td> <td colspan="3">직전년도 이사회를 연3회 개최한 경우</td> </tr> <tr> <td>5단계</td> <td colspan="3">직전년도 이사회를 연4회 이상 개최한 경우</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출석율 기준에 따른 점수 × 1/2 + 개최수 기준에 따른 점수 × 1/2</p>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r> <tr> <td>0점</td> <td>25점</td> <td>50점</td> <td>75점</td> <td>100점</td> </tr> </table> | | | 출 석 율 | 1단계 |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75%미만인 경우 | | | 2단계 |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75%이상~85%미만인 경우 | | | 3단계 |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85%이상~90%미만인 경우 | | | 4단계 |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90%이상~95%미만인 경우 | | | 5단계 |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95% 이상인 경우 | | | 개 최 수 | 1단계 | 직전년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 | | 2단계 | 직전년도 이사회를 연1회 개최한 경우 | | | 3단계 | 직전년도 이사회를 연2회 개최한 경우 | | | 4단계 | 직전년도 이사회를 연3회 개최한 경우 | | | 5단계 | 직전년도 이사회를 연4회 이상 개최한 경우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출 석 율 | 1단계 |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75%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75%이상~85%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85%이상~90%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90%이상~95%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95%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 최 수 | 1단계 | 직전년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직전년도 이사회를 연1회 개최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직전년도 이사회를 연2회 개최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직전년도 이사회를 연3회 개최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직전년도 이사회를 연4회 이상 개최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점 | 25점 | 50점 | 75점 |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VI 대응 | 7.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 의사결정 참여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화폐가치로 측정된 사회적/환경적 성과

| 구분 | 분류번호 | 영역 | 범주 | | | | | | | | | | |
|--------|---|----------------------------|-------------|----------------------------|-----|-----|-----|-----|-----|-----|-----|-----|-----|
| | | 5-1-1 | 사회적가치(SV)창출 | 전략적 SV 창출 (미션, 비즈니스 연결) | | | | | | | | | |
| 항목 | 화폐가치로 측정된 사회적/환경적 성과 | | | | | | | | | | | | |
| 항목 설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이 만들어낸 사회성과를 (재)사회적가치연구원의 SPC방식을 일부 적용하여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측정 • 조직의 사명과 사회성과 창출방법에 따라 사회성과를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며, 제품/서비스성과, 내부공정성과, 외부공정성과, 환경성과를 측정한다 <p>*제품/서비스 성과 : 사회적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대상 집단의 삶의 질 개선 효과 *내부공정성과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고용해 발생한 사회적 편익 증대 *외부공정성과 : 사회 구조적 제약으로 인한 취약생산자 및 지역 등을 가치사슬에 적극 결합시켜 취약성을 극복하도록 돕는 성과 *환경성과 : 조직의 생산과정을 통해 한정된 자원의 절감과 환경오염 발생 저감 성과</p> | | | | | | | | | | | | |
| 성과 점검 | <p>성과 측정 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직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만을 측정 ② 조직이 창출한 성과 중,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결과만을 측정 ③ 객관적이고 보수적인 기준에 따라 측정 <p>*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표 및 측정식 도출 필요</p> <p>[데이터 원천] 성과보고서 [데이터 기간] 직전년도 [데이터 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 [데이터 산식] ① 제품/서비스성과 = 기업이 제공한 현물·할인·기부 금액 총액 ② 내부공정성과 = 취약계층 제공 급여 총액 ③ 환경성과 = 자원절감 총액 + 환경오염 저감 총액 ④ 외부공정성과 = 취약생산자 추가가격 및 거래기회제공 등 총액</p> | | | | | | | | | | | | |
| 점검 기준 | 1단계 | 측정대상 전체 중 1~20%미만 구간 | | | | | | | | | | | |
| | 2단계 | 측정대상 전체 중 20%이상 ~ 40%미만 구간 | | | | | | | | | | | |
| | 3단계 | 측정대상 전체 중 40%이상 ~ 60%미만 구간 | | | | | | | | | | | |
| | 4단계 | 측정대상 전체 중 60%이상 ~ 80%미만 구간 | | | | | | | | | | | |
| | 5단계 | 측정대상 전체 중 80%이상 구간 | | | | | | | | | | | |
| | <p>*전체 측정 결과의 분포 구간으로 사후 측정함</p>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thead> <tr> <th>1단계</th> <th>2단계</th> <th>3단계</th> <th>4단계</th> <th>5단계</th> </tr> </thead> <tbody> <tr> <td>20점</td> <td>40점</td> <td>60점</td> <td>80점</td> <td>100점</td> </tr> </tbody> </table>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20점 | 40점 | 60점 | 80점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 | | | | | | |
| 20점 | 40점 | 60점 | 80점 | 100점 | | | | | | | | | |
| SVI 대응 | <p>3.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내부운영의 사회적가치 - 사회적가치 실현노력 3.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6.사회적환원노력도-조직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 지역사회 재투자 및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의 금액합산 실적 14.혁신성과-혁신노력도-혁신의 결과</p> | | | | | | | | | | | | |

[사회성과 창출방식에 따른 성과영역별 세부지표]

| 사회성과 영역 | 사회성과 창출방식 | 세부 성과지표 |
|------------|--------------------------------------|-----------------------------|
| 제품/서비스 성과 | 동일 제품의 할인/무료 제공 | 할인무료 제공 |
| | 시장배제집단을 위한 특화 제품 및 서비스 제공 | |
| | 사회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 |
| | 추가 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 | 추가 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 |
| 내부공정 성과 | 취약계층 고용 | 직접고용 |
| |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반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교육 및 이직기회 제공 | 경과성 일자리 |
| |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돌봄서비스 대체 | 중증 돌봄 대체 |
| 외부공정 성과 | 소농의 소득 증진 | 소농거래 |
| | 해외 소농의 소득 증진 | 공정무역 - 농산물 |
| | 취약국가 생산자의 추가 거래 기회 제공 | 공정무역 - 비농산물 |
| | 취약지역 주민 소득 증진 | 공정여행 - 해외, 국내 |
| |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액 증대 | 크라우드펀딩 - 기부형, 리워드형 |
| | 창업지원 등을 통한 소득 증진 |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 |
| | 취약생산자의 추가 거래 기회 제공 | 취약생산자와 거래 시 새로운 거래 기회 제공 |
| | 신진예술가와 작품 거래 | 문화예술 자산보호 |
| | 공익활동 지원 | 비영리 조직 지원 |
| | 공공예산 효율성 증대 |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
| | 취약생산자 소득 증진 | 취약그룹 불공정 거래 예방 |
| | 환경 성과 |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
| 재제조 | | |
| 재활용 | | |
| 친환경 대체재료 | | |
| 친환경 프로세스 | | |
| 생태계 복원력 강화 | | |